

美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향후 전망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Ⅰ.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서명 / 1

Ⅱ. 기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부 발표 내용 / 6

Ⅲ. 전망 및 시사점 / 8

요 약

□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본격 착수

-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

* 백악관 內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특사(John Kerry) 및 기후변화 차르(Gina McCarthy) 등 보직 신설

※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기후 공약 주요내용

: ①파리협정 재가입, ②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25년까지 타겟 목표 수립)
③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④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⑤가스 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⑥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

□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1.20) 및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1.27) 내용 중점 분석

①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

- 美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120일 이내)

② 국제적 협의채널(G7,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 우선적 논의 추진

- 파리협약 재가입 및 이에 필요한 국가결정기여*(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수립 작업 착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

③ 에너지·환경규제 강화 예고

- 부처별로 親기업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 검토를 통해, 유예·수정·철회 여부 고려

· ①오일 가스분야 메탄가스 배출 감축, ②자동차 연비, ③가전·기계 에너지 절약 기준 및 ④유해 공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한 내 조치결정 예정인 바, 동 분야 內 규제강화 전망

-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계*

* 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추정할 것을 지시

④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석유·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
- 연방정부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 연방정부 구매력 및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조치

· 범정부 청정에너지 산업부흥 종합계획 수립

* ① 35년까지 전기분야 내 무탄소공해 실현, ② 연방·주로·컬 정부 內 청정·무탄소 차량 사용 등의 내용 포함

· (바이 아메리칸)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증대에 필요한 조달시 의무화

· 연방 소유 토지와 연안 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2배 확대 목표

- (연방정부 인프라 투자) 기후공해 축소를 의무화하고,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

□ 기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부 발표내용

- (2021 USTR 통상아젠다)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및 교역국이 기존 무역 협정 내 환경기준을 위반할 경우 대응 계획

- (WTO 각료결의안 초안*) 환경규정 위반도 WTO에서 규정하는 상계 가능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대응토록 제안

* '공정경쟁환경 무역규칙을 통한 지속가능목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제출('20.12.17)

-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정책기조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 다대
- (향후일정) 차기 각료회의(시기 미정)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필요

- (SEC 정보공시)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게리 겐슬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상장회사 공시 강화 필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 여부 선택 가능

-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리스크, 의무 준수여부 투명공개 및 투자자 대상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 포함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 (대내적) 환경규제 강화 가운데, 연방정부 자산과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산업(전기차 등)을 미래 핵심역량으로 육성 추진
 - 현재 논의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최소 2조 달러 규모 전망*)는 바이아메리칸 조항 등을 활용하여, 미국 그린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 (Goldman Sachs) 기존 제안내용과 미국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 예측치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최소 2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ESG 공시강화 등 그린금융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대외적) 기후변화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한 바,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을 직접 연계하여 교역국(특히, 신흥국) 압박 전망
 - (탄소국경세) 특히,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국 기업경쟁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해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도입시, 시멘트·석유화학·철강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 중심으로 영향 불가피. 끝.

※ 바이든 행정부 탄소국경세 추진전망 (자료원 : 미국 로펌 Steptoe 인터뷰 결과)

· 입법 또는 행정명령을 통한 도입 가능성 (행정명령 옵션 가능성에 무게)

① (입법) 초당파적 컨센서스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친환경' 사안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사안으로 프레임이 가능하다면 양당지지 확보 가능

- 그러나 50:50으로 나뉜 상원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으며, '22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어, 올해 안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도하거나, '22년 뒤로 후속작업이 미뤄질 전망

② (행정명령) 국가안보 명목의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 우세

- 다만, 국내 탄소세 도입 없이 탄소국경세가 먼저 도입된다면, WTO 협정과의 불합치성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 내 관련 제소 불가피

* WTO에서는 내국세와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국경조정세' 명목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만 허용

· 현재로서는 올해 6월로 예정된 EU 탄소국경세 법안 도입 관망 입장

- 일각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행정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전망도 제기

I.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서명

□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본격 착수

-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

* 백악관 內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특사(John Kerry) 및 기후변화 차르(Gina McCarthy) 등 보직 신설

※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기후 공약 주요내용

: ①파리협정 재가입, ②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25년까지 타겟 목표 수립)
③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④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⑤가스 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⑥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

□ 행정명령 주요 내용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E.O.13990/1.20) 및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E.O.14008/1.27) 내용 중점 분석

①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

- 美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120일 이내)

② 국제적 협의채널(G7,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 우선적 논의 추진

- 파리협약 재가입 및 이에 필요한 국가결정기여*(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수립 작업 착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

③ 에너지·환경규제 강화 예고

- 부처별로 트럼프 행정부 조치 검토를 통해, 유예·수정·철회 여부 고려
- ①오일 가스분야 메탄가스 배출 감축, ②자동차 연비, ③가전·기계 에너지 절약 기준 및 ④유해 공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한 내 조치결정 예정인 바, 동 분야 內 규제강화 전망
-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계*

* 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추정할 것을 지시

④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석유·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
- 연방정부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 연방정부 구매력 및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조치

· 범정부 청정에너지 산업부흥 종합계획 수립

* ① '35년까지 전기분야 내 무탄소공해 실현, ② 연방·주로·컬 정부 內 청정·무탄소 차량 사용 등의 내용 포함

· (바이 아메리칸)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증대에 필요한 조달시 의무화

· 연방 소유 토지와 연안 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2배 확대 목표

- (연방정부 인프라 투자) 기후공해 축소를 의무화하고,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

< (참고)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內 주요 조항 발췌 >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E.O.13990/1.20)

Sec. 2 각 부처별로 지난 4년간('17.1.20 ~ '21.1.20) 취해진 조치 타겟 즉각적인 검토 추진

부처별로 지난 4년간 취해진 조치 타겟으로 동 행정명령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장애가 되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함. 하기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치의 유예·개정·철회 여부를 제안

- 석유와 가스 분야 메탄가스 배출 감축 ('21.9월까지) :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 : 신규·개정·수정 배출원(sources) 재검토" 85 Fed. Reg. 57398 ('20.9.15)
-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연비 기준 수립
 - SAFE Rule Part One(One National Program)" (84 Fed. Reg. 51310 /'19.9.27) 은 '21.4월까지 제안
 - SAFE 승용차, 경트럭 Model Year 2021-2023(85 Fed. Reg. 24174/'20.4.30)은 '21.7월까지 제안
 - 노조, 주정부, 관련 산업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
- 고용창출이 가능한 가전제품 및 빌딩 효율성 기준 수립
 - 가전 기준 관련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 신규 혹은 개정 에너지 보존 기준 관련 사용

절차 및 가전제품 및 상업용/공업용 장비에 대한 테스트 절차 (85 Fed. Reg. 50937/'20.8.19)는 '21.3월까지 메이저 개정안 제출 (나머지 제안은 '21. 6월까지)

- 2018 국제 에너지 보존 법규(IECC) 내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최종 결정(84 Fed. Reg. 67435/'19.12.10)은 '21.5월까지 제안
- ANSI/ASHRAE/IES 90.1-2016 기준 내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최종 결정 및 저층 주택을 제외한 빌딩 에너지 기준(83 Fed. Reg. 8463 /'18.2.27)은 '21.5월까지 제안
- 대기 오염으로부터의 보호 : 유해 공기오염원에 대한 전미 배출기준 : 석탄 및 석유로 발전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유닛 : 추가연구, 잔여 위험 및 기술 검토 고려 (85 Fed. Reg. 31286/ '20.5.22) 대해서는 '21.8월까지 제안
- Clean Air Act 규칙 제정 절차 내 손익 계산시 일관성과 투명성 개선 (85 Fed. Reg. 84130 /'20.12.23) 관련 제안은 가능한 빨리 제출

Sec. 5 기후 오염 감소의 이익 계산

- 각 기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비용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히 파악하며, 특히 각 온실가스들로 인한 피해를 계산하여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아산화질소의 사회적 비용 (SCN)", "메탄의 사회적 비용(SCM)"을 추정할 것을 지시함
- 이러한 계산에는 순농업생산성과 사람의 건강, 홍수 위험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재산 피해, 생태계 가치사슬 파괴에 대한 피해 등을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비용이 클수록 연방 정부는 더 강력한 기후위기 대처 정책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Sec. 6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허가('19.5월) 취소

㉠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E.O. 14008/1.27)

Sec. 101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중심에 배치

Sec. 102 목 적

파리협약 재가입을 필두로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의 중심에 배치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추진

- 기후 정상회의 개최 및 이를 필두로 에너지-기후 관련 주요국 포럼을 개최예정
-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규로 기후변화특사도 임명
- G7, G20 등 국제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논의 추진
- 국가결정기여(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수립 작업 착수했으며, 기후정상회의 개최 이전 동 목표 제출 추진

- 신흥국의 배출량 감축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파이낸스 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자 및 양자 채널 및 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 계획

Sec. 202 백악관 내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신설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정책 수립 절차를 조율

Sec. 203 국가 기후 대책위원회(Task Force)

- 국가 기후 보좌관의 책임 하에 재무부, 국방부, 내무부, 상무부, 노동부 등 21개 부처의 장관 및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가 기후 대책위원회 설치

Sec. 204 목 적

연방정부의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해 기후대응 조치 뒷받침

Sec. 205 연방 청정 전기 및 차량

- 조달 전략: Sec. 203에 따른 Task Force를 통하여 청정에너지 산업 부흥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상기 조달 전략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35년까지 무탄소공해 전기사용 도모, ② 연방, 주, 지역 정부 차원에서 (우편서비스 차량 포함) 청정·무탄소 차량 사용, ③ 필요시 추가적인 입법 제안, ④ 청정에너지 사용 및 유지를 위한 조합 업무 창설 (新차량 제조를 위한 조합 업무 창설 도모) - 동 계획은 대책위원회에 행정명령 발효 이후 9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

Sec. 206 조달 기준

- 미국 내 미국 노동자의 제조를 보장하는 '21.1.25일자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따라, 각 기관들은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증진, 청정에너지 조달 결정에 있어서 Made in America 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Sec. 207 공유지 및 연안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 내무부 장관은 공유지 및 연안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 증진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30년까지 해상풍력 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임무를 설정함.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 장관들과 협의)

Sec. 208 공유지 및 연안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 내무부 장관은 공유지 및 연안에서의 새로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중지시키고 이러한 개발의 허가를 중단함.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시 공유지 및 연안으로부터 시추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사용료를 기후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Sec. 209 화석 연료 보조금

- 각 기관의 장은 예산관리국장 및 국가 기후 보좌관에게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통보하고, 연방 지원금이 화석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Sec. 210 청정에너지 관련 재무관리

- 각 기관의 장은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상용화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여력을 예산관리국장 및 국가 기후 보좌관에게 통보함
- 예산관리국장은 청정에너지 기술 및 시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2022년도 대통령 예산 요청의 우선적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Sec. 211 적응 및 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후 대응 계획, 데이터, 정보 상품

- 각 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와 연방 지속가능성 책임자에게 동 행정명령 발효 후 1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행동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기후 관련 취약점,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발전을 위한 조달 권력 사용 계획 포함)
- 동 행동계획 제출 후 30일 이내에 연방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예산관리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 행동계획과 동 행정명령에 제시된 정책 방향과의 합치성을 검토함
- 최초 행동계획 제출 후 각 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와 연방 지속가능성 책임자에게 연간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무부와 국토안전부 장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책임자는 대책위원회에 각 지역별 기후 대응 활동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연방 지도 서비스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Sec. 215 민간 기후단 설립

- 내무부 장관은 농림부 및 관련 부처의 장들과 함께 협의하여 동 행정명령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민간 기후단 설립 계획 전략을 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Sec. 216 미국 토지 및 연안의 보존

- 내무부 장관은 농림부, 상무부 장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동 행정명령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이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의 토지와 연안을 보존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Sec. 218 석탄 및 발전소들의 경제 재부활을 위한 중개 작업반

- 재무부, 내무부, 농림부, 상무부, 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된 중개 작업반을 통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발전소들의 경제 재부활 전략을 개발함

II. 기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부 발표 내용

① 2021 USTR 통상아젠다*

* USTR이 발간(3.1)한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 무역협상 내 강력한 환경기준(불법벌목·야생동물거래금지 등) 포함 및 집행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 추진
- 동맹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 과정에 동참하면서, 교역국이 기존 무역협정 내 환경기준을 위반할 경우 대응 계획

② WTO 각료결의안 초안 제출 ('20.12.17)

- 미국은 EU,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네갈 등이 참여한 WTO 논의에서 '공정경쟁환경 무역규칙을 통한 지속가능 목표 추진' 각료결의안* 초안 제출
 - * Advancing Sustainability Goals Through Trade Rules to Level the Playing Field(WT/GC/W/814)
-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바, 동 초안 지속 추진 가능
- (세부내용) 환경규정 위반도 보조금과 동일시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조치를 확대
 -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WTO 협정 전반의 취지 및 GATT 협정 제XX조 (b)항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각료결의를 도모
 - 만약 WTO 회원국 정부가 근본적인 기준(fundamental standard) 또는 그 이상의 환경 보호 보장을 위한 법률 및 규제 도입·유지·이행·효과적 집행을 실패하는 경우, 이는 보조금 협정상 '조치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

- 만약 근본적인 기준 이하로 설정된 오염 통제나 기타 환경 조치들로 인해 어떠한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면, 회원국은 동 산업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관세 영역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 동 산업이 받은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불이행 정도를 보조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
- (향후 일정) 각료결의안 초안은 각료회의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하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각료회의 개최 지연
- 제12차 WTO 각료회의는 '21년 11월 29일 개최 예정이나 추가 변동 가능

③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정보공시 관련 발언종합

- 기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ESG 정보공개에 미온적 태도 견지
 - '19년 7월 상정된 법안에서는 증권거래위에서 ESG 공시 규칙을 작성토록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부결
 -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항목에서 약점을 가지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할 뿐이며, 기업 자원의 낭비일수 있다는 의견
 - 당시 증권거래위원장은 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ESG 등급정보는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 당부('20.5월)
- 바이든 정부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게리 겐슬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상장회사 공시 강화 필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 여부 선택 가능
 -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리스크**, 의무 준수여부 투명공개 및 투자자 대상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 포함 예상
 - 현지 SEC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엘리슨 리는 미국진보센터(CAP) 연설에서 SEC가 공시정책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III. 전망 및 시사점

- (대내적) 환경규제 강화 가운데, 연방정부 자산과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산업(전기차 등)을 미래 핵심역량으로 육성 추진
 - 현재 논의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최소 2조 달러 규모 전망*)는 바이아메리칸 조항 등을 활용하여, 미국 그린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 (선거공약) 향후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 * (Goldman Sachs) 기존 제안내용과 미국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 예측치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최소 2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ESG 공시강화 등 그린금융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한편, 트럼프 행정부 조치 검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의 은퇴연금((401k)) 법안*도 전면 재검토 예정인 바, 연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ESG 요소 반영 가능성
 - * 은퇴연금 운용 수탁자 책임으로 '재무 이익 최우선'을 명시한 개정안 발효 ('20.12월)
- (대외적) 기후변화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한 바,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을 직접 연계하여 교역국(특히, 신흥국) 압박 전망
 - (TPA와 연계 가능성)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조건부로 오는 6월말 만료되는 TPA 연장될 가능성 전망
 - (탄소국경세) 국내기업 타겟 탄소세와 수출기업 타겟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예상
 - 특히, '유럽 그린딜'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결합될 경우, 시멘트·석유·화학·철강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 중심으로 직간접적 영향 불가피

□ (참고) 바이든 행정부 탄소국경세 추진 전망

* 미국 로펌 Steptoe 자문 결과 요약

○ (입법화 가능성)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에 있어 국내 탄소세 도입 및 탄소국경세에 대한 초당파적 컨센서스를 확보하기에는 애로

-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COVID-19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양당의 지지를 얻는데 이미 실패한 바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그린 인프라 법안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
-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세를 '친환경' 사안이 아닌 '국가 경쟁력' 사안으로 프레임화 할 수 있다면 양당 지지 확보 가능
- 그러나 50:50으로 나뉜 상원 법안 통과는 쉬운 일이 아니며, '22년 선거를 통해서 하원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상존
-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직시하고 보다 신속하게 동 조치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 해 안에 관련 후속 작업이 진행하거나 아예 '22년 선거 이후 진행 가능

○ (행정명령) 대다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신속한 행정명령을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 전망

-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적 사안이라고 선언한다면, 관세부과 정당성 확보 가능
- 다만, 232조 조치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 우려

① (WTO 협정과 합치성 우려) 탄소국경세는 그 취지상 국내 탄소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타 기후 대응 관련 환경규제*수준에 맞추어 탄소국경세를 먼저 도입가능하나 WTO 협정과 상충 가능성

* 국내 탄소세가 도입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중

② (법원 제소증가 가능) 여러 환경 규제들과 관련하여 법원에서의 분쟁이 증가하여, 조치시행 금지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탄소국경세의 WTO 협정 합치성 문제**

- GATT 제II조 2항 (a)호에서는 수입품이 수입국 시장으로 유입될 때 동등한 시장 경쟁 조건을 위하여 수입국 국내 상품에 부과되고 있던 내국세와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러한 조정을 '국경조정세 (Border Tax Adjustment)'라고 하며, 탄소국경세도 원칙적으로는 수입국 국내에서 부과되는 '탄소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다른 형태의 환경 규제들의 수준을 임의로 결정하여 국경조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GATT 제II조의 위반 문제가 발생 가능

- (논의 전망)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국경조정세와 관련하여 올해 6월에 곧 결정될 EU 동향 주시
 - 최근 John Kerry 특사가 유럽위원회 부의장인 Valdis Dombrovskis와 탄소국경세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막연한 추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관련 행정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제기

작 성 자

- 통상지원팀
- 워싱턴 무역관

이 정 선
Samuel Lee

Global Market Report 21-009

美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전망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1년 3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통상지원팀 (02-3460-7509)
I S B N		979-11-6490-902-5(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